[별지 제50호의2서식]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(수출물품)

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

조사구분	■수출물품 조사 □수입물품 조사		
통지번호(일자)			
① 조사대상자			
상호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*개인(사업자)에 한함
사업장소재지			
② 조사내용			
조사기간			
조사방법	□서면조사 □현지조사		

조사대상 물품

C/O발급번호 (발급일자)	품명 (HS코드)	원산지결정 기준	금액 (천불)	수출입신고 번호

③ 조사결과

조사결과(내용)	* 원산지적정여부
	* 판단이유 및 법적근거
조치사항	* 원산지불인정 통지, 벌금 ·과태료 등
붙임서류	○ 관련서류 등

1.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.

2. 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7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세 관 장 직인

○○과 담당자 ○○○
우 ○○○○○ 주소 ○○시 ○○동○○○ / www.customs.go.kr
전화 /fax /e-mail

210㎜×297㎜(일반용지 660g/㎡(재활용품))